

제30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김달호 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달 호
(무소속,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성동구 제4선거구 김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2019. 10.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대북지원사업자에 지자체를 추가함으로써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지자체가 독자적인 추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법제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남북 교류협력 분야 중에서도 인도적 지원과 구호 및 개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

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특색을 반영한 교류협력의 발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